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27
----------	-------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안상훈 · 이종배 · 이종욱
진종오 · 안철수 · 배준영
김승수 · 이양수 · 김성원
한지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복지 급여 신청 전에 한부모 본인의 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신청 의사 표시가 없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 사유의 발생·변경·상실의 조사·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한부모가족에게 복지 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지원대상자의 발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28조의 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신청 의사 표시가 없어도 직권으로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미리 그 직권신청 계획안(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 계획안을 포함한다)을 해당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신청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인 모 또는 부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지원대상자인 모 또는 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3. 지원대상자인 모 또는 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인 모 또는 부가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대한 직권신청 계획안의 심의 요청 및 그 심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신청한 지원대상자”를 “신청한 지원대상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지원대상자의”를 “지원대상자(같은 조 제2항에 따

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적극행정 인센티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포상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과 홍보) ① · ② (생략)</p> <p><신설></p>	<p>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과 홍보) ① · ② (현행과 같 음)</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 률」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한부모가 족의 모 또는 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 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생 략)</p> <p><신설></p>	<p>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현 행과 같음)</p> <p>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사 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신청 의
사 표시가 없어도 직권으로 제
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미리 그 직권신
청 계획안(제12조의3제1항 단
서에 따른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 계획안을 포함한다)을 해
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
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직권신청 여부
를 확정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인 모 또는 부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
인인 경우
2. 지원대상자인 모 또는 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3. 지원대상자인 모 또는 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또는 제12조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인 모 또는 부가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대한 직권신청 계획안의 심의 요청 및 그 심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
-----제4
항-----

-----.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

-----신청한 지원대상자

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이 조에서 같다)의-----

----- .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② ~ ⑦ (생략)

<신설>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적극행정 인센티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포상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